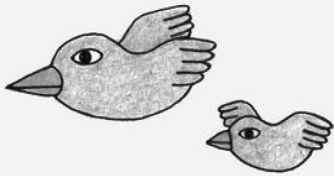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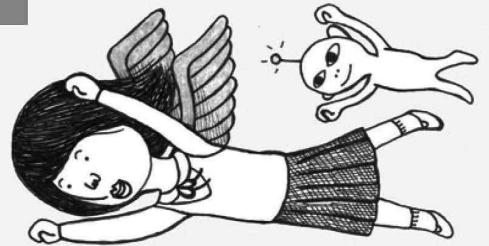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 제정을 위한 추진대회



일시

2009년 9월 25일(금) 오후2시

장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당



주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주최

 **경기도교육청**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대회

### □ 운영일정

분야	일정	주요내용	방법	주관
13:30-14:00 (30')	◦ 등록	- 등록		경기도교육청
14:00-14:15 (15')	◦ 식전 공연	- 작은 음악회	공연	유선만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14:15-14:55 (40')	◦ 제1부 개회 및 공식행사	- 개회사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인사말씀 - 내빈 격려사 - 활동보고		유선만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 경기도교육감 자문위원장
14:55-15:05 (10')	◦ 휴식			
15:05-15:20 (15')	◦ 막간 공연	- 인권 영화	공연	유선만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15:20-16:00 (40')	◦ 제2부 의견수렴	- 영상의견(5') - 조례 제정과 경기교육비전 (15') - 현장의견(20')	협의	자문위원장 배경내 위원 자문위원장
16:00	◦ 폐회	- 폐회사		



# Contents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에 즈음하여 .....	1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활동 경과보고 .....	9
1. 자문위원회 구성 .....	11
2. 자문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 .....	13
3. 자문위원회 향후 활동계획 .....	14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안)의 기본원칙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원칙 .....	15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안)의 기본원칙 .....	17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운영원칙 .....	18
◆ 경기도학생인권조례로 여는 새로운 학교의 전망 .....	19
◆ 부록 .....	43
<부록 1 : 광주학생인권조례안,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일본 가와사끼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	45
<부록 2 : 추진대회 설문지> .....	71
<부록 3 : 학생인권조례 홈페이지> .....	73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에 즈음하여

---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에 즈음하여

우리의 미래를 주도할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회와 학교와 가정에서 행복한가요? 우리의 사회현실은 자살이 청소년 사망원인 2위라고 대답합니다. 우리의 학교현실은 학생들이 획일화된 교육과 가혹한 경쟁에 지친 나머지 학교와 선생님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우리의 가정현실은 학생들이 지나친 사교육 때문에 가족들 얼굴 볼 시간도 없이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보다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가정현실이라는 대답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생활하는 선생님들은 행복한가요? 우리는 선생님들이 교육과 행정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들이 제자들의 고단한 현실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 때로는 안타까움에 때로는 무력감에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막막해서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여전히 이러한 현실 속의 학교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언젠가는 신바람 나게 달려가고 싶은 행복한 학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 그런 행복한 꿈을 꾸는 학생의 보호자들과 지역사회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그래도 미래의 희망을 학교에서 찾고자 합니다.

또 우리들 모두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갈 의무도 있습니다. 이곳이 치열한 무한경쟁으로 무너지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가꿔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 가족들은 ‘새로운 학교, 함께 하는 경기교육’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학교에서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모든 노력을 경기도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는 주민이 처음으로 직접 뽑은 교육감으로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학교 공동체의 터전을 일구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청소년들이 자라나서 자동적으로 민주적인 시민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인간의 존엄에 대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 소중한 기억이야말로 존엄한 인격을 향한 가장 큰 디딤돌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한 존재입니다. 헌법도 인간이 존엄한 존재이며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권은 인간이기만 하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아직 더 배워야 할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행복한 학교는 바로 이러한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입니다. 저는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가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맞닿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 규범에 있는 열 개의 열쇠말을 빌려 행복한 학교를 그려 보겠습니다.

첫째, 행복한 학교는 학생이 인권의 존엄한 주체로 존중 받는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약자인 학생이 존중 받을 때 선생님도 학교관리자도 존중 받고 존경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행복한 학교는 학생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초등학교도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 이러한 권리를 자신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서 정당하게 존중 받는 학교가 행복한 학교입니다.

셋째, 행복한 학교는 학생이 차이를 존중하되 차별에 맞서는 능력을 키워주는 학교입니다. 모든 학생이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는 능력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넷째, 행복한 학교는 학생들이 감당할 만한 정도의 교육을 받는 학교입니다. 모든 교육이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많은 학습 노동을 요구하거나 상급 학교 진학에 불모잡힌 교육은 학생들을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체벌과 혹독한 훈육에 의지하는 교육 또는 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교육을 학생들에게 감당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째,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은 존중 받음으로써 존중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교는 사회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방식을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행복한 학교는 학생들의 총체적 삶을 돌보는 학교입니다. 학교는 학생에게 단순히 학습 능력만을 배양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터전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행복한 학교는 학생들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기반을 갖춘 학교입니다. 학생들의 각 권리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 각각의 가치들이 서로를 강화하고 보완하며 통합될 때라야만 권리로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리의 이름으로 다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해야 합니다.

여덟째,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생 자신은 물론 선생님, 보호자, 지역사회, 민간단체 및 기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는 학교입니다. 학교는 학교 당국자들만의 폐쇄적 공간이 아닙니다. 옛 어른들은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을’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고 책임지는 학교를 꿈꿔 봅니다.

아홉째, 행복한 학교는 선생님의 권한과 역량이 강화된 학교입니다. 총체적 교육 환경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채 선생님 개인에게 학생 인권을 존중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육 개혁도 선생님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주인의식이 없이는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학교는 모든 단계의 교육체계에서 선생님이 존중 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는 학교입니다. 선생님은 학생의 인권과 자신의 인권이 함께 존중 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변화를 끌어내는 적극적인 옹호자이어야 합니다.

열째, 행복한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 침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수단과 절차를 다양한 수준에서 보장하는 학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는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면 조언을 해주고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행복한 학교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학교입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어렵지만도 않습니다. 제일 먼저 넘어야 할, 가장 높은 벽은 혹시라도 우리 모두가 조금씩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선입견 또는 편견입니다. 인권을 오해하고 있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인권이라는 것을 위험한 장난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인권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권은 가장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인권이 의존하고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주장을 하는 이가 사람이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학생은 학생 이전에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권은 남을 구속하는 무기가 아니라 최소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막입니다. 인권은 골치 아픈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권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 그리고 소통을 갈구합니다.

두 번째로 어른들은 학생들이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답지 않다고 말하곤 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그들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십시오. 진정한 공부는 스스로 익히고 깨침에 있지 않았습니까? 막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스스로 균형 잡고 발을 딛는 능력을 키웁니다. 보호자는 넘어진 아기를 일

오켜 주고, 한 발짝을 내딛을 때 박수를 쳐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설명해 줄 수 없고 억지로 견게 할 수 없습니다. 자주적 생활 능력은 스스로 학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지 수동적으로 주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과 보호자 그리고 어른들은 학생들을 지켜봐 주고 응원하고,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 학생의 인권 보장이 선생님의 교권과 보호자의 교육권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교육기본법상 규정 순서는 학습자, 보호자, 교원 순입니다.

먼저 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학교 교육 또는 사회 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여 제3항에서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한편 교육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하여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은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기본법 제14조는 선생님에 대하여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육공동체는 학생, 보호자, 선생님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향유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에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서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학생들을 방임하거나 교육을 포기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인격적 자율성을 경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찬찬히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은 그것을 들여다보는 돋보기일 뿐입니다. 학생은 또는 청소년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처 존중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권이라는 돋보기가 필요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학생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들은 보호와 양육만을 필요로 하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학생이 행복을 가꾸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학교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시작일 뿐입니다.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는 노력을 시작한 광주시와 경상남도가 있는 만큼, 서로 응원하는 마음이 보태진다면 한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몇몇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 하나하나에 학생, 선생님, 보호자, 학교관리자, 지역사회, 지역의 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 지방의회, 관련 국가기관 등이 도움의 손을 보태야 합니다. 즉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들이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서로 힘내자고 독려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또 다른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선뜻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머지않아 분명 학생인권의 뜻을 담은 손들이 서로 이어져 행복한 학교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꿈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9. 25.

경기도교육감 김 상 곤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의 활동 경과보고

---



1. 자문위원회 구성
2. 자문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
3. 자문위원회 향후 활동계획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 활동 경과보고

자문위원회 위원장 곽 노 현

## 1. 자문위원회 구성

### 가. 경위 및 위상

경기도교육청은 김상곤 초대 민선교육감 취임 이후 중등교육과를 중심으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관계자들이 모두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권역별 공청회 실시 등 조례입법 절차를 추진하기 이전 조례안을 만들기까지 심도 있는 연구 및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조례제정 과정을 전문적이고 실질적으로 자문하는 역할을 할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2009. 7. 30. 경기도교육감의 위촉을 받아 구성되어 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교육관계자들 및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 13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경기교육당사자들 및 각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고루 수렴하고 의견수렴결과와 정책연구용역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조례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위원회로 그치지 아니하고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사업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경기교육 주체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 나. 자문위원회 구성

학생인권조례자문위원회는 2009. 7. 30. 경기도교육감의 위촉을 받아 구성되어 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교육관계자들 및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한 13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의 호선으로 인권법학계를 대표하는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가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인교 동안고등학교 교장, 기획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되었습니다.

<자문위원 명단> (가나다순)

곽노현 : 위원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전)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김규영 : 귀인초등학교 교장

김영기 : 법무법인다산 변호사

김인교 : 부위원장, 동안고등학교 교장

김철홍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장

김혜래 :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

박진 :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배경내 :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서미향 :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교사

안승문 : 초록교육연대 공동대표, 전)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오동석 : 기획소위 위원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원일 : 이충고등학교 교감

이재삼 :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 2. 자문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

### 가. 5차에 걸친 협의회 및 연찬회 개최

자문위원회는 2009. 7. 30. 제1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2009. 9. 11. 제5차 협의회까지 전체 자문위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5차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2009. 9. 10.~11.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연찬회를 진행하였습니다.

5차에 걸친 협의회 및 연찬회 과정에서 자문위원회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기본원칙과 자문위원회 운영원칙에 관해 논의하여 기본원칙과 운영원칙을 마련하였고 조례안 성안에 이르기까지 교육주체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계획하였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팀의 선정 기준에 관해 논의하고 공모를 거쳐 정책연구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연찬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광주와 경남의 사례, 일본 가와사끼시아동의권리에관한조례 제정사례 등 국내외 사례, 학생인권의 국내외 기준과 학생인권 현실, 학생인권과 교권 등 쟁점분야,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적된 연구결과 등에 관해 관련 전문가들을 직접 초빙하여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 나. 기획소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자문위원회는 구체적인 조례안을 완성하기까지 자문위원회의 활동 과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소위원장으로 하고 4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기획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기획소위원회는 전체 자문위원회 협의를 전후하여 여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 정책연구용역팀 선정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지역 학생들의 인권관련 실태 및 인권의식 분석, 국내외 비교연구 등을 통해 조례안 제정의 근거와 조례에 담길 내용의 열개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팀을 공모하고 그에 지원한 5개 연구팀에 대해 심사하여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인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한 바 있는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를 정책연구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적합한 정책연구팀의 선정을 위해 선정기준에 관해 논의하고 심사에 참여하는 등 정책연구팀 선정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 라. 자문위원회 홈페이지 마련

자문위원회는 공청회나 협의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 과정을 거치는 것과 별도로 학생들을 포함한 경기교육주체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조례제정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http://human.kerinet.re.kr>)를 개설하였으며,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의 활동 및 관련 자료에 관해 널리 공개하고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3. 자문위원회 향후 활동계획

#### 가. 충분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절차 진행

자문위원회는 향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이 마련되기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별 사전협의회, 권역별 공청회,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조례안 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참여기획단 공모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절차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나. 충분한 홍보와 도민의 참여 도모

자문위원회는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한 홍보, 학생들에게 친숙한 홍보대사의 선정, 학생인권 관련 UCC, 글짓기, 그림, 표어 등 공모, 만화, 웹자보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계획하고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례제정 과정이 충분히 홍보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주체들을 포함한 모든 도민들이 소외됨 없이 깊은 관심 하에 조례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할 것입니다.

#### 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한 조례안 성안

자문위원회는 경기지역 학생들의 인권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학생인권 관련 원칙과 기준들을 충실히 따르며 각계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미래지향적이고 조화로운 조례안을 성안하기 위해 학습·조사·분석·연구 등 작업을 심도 있게 진행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역량에 더하여 교육주체들 및 각계 전문가들과 정책연구용역팀의 긴밀한 연계 및 협력 하에 궁극적으로 경기 교육 주체들 모두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 것입니다.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안)의 기본원칙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원칙

.....



-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안)의 기본원칙
-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의 운영원칙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안)의 기본원칙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원칙

###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안)의 기본원칙

-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조례안을 이렇게 함께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 1. 학생이 인권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학생은 일방적으로 훈육되고 관리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학생도 당연히 그리고 엄연히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인권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자율·참여·평등·비차별·안전·복지 등의 모든 영역에서 보다 두텁게 인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 2. 헌법과 법률 및 국제인권기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학생에게 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등 법률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법은 학생인권 관련 규범적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 법규범에 근거를 두고 그 규범적 기준을 수용하고 구체화하는 조례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 3.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보호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학교공동체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은 선생님의 교권이나 보호자의 교육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은 오히려 교권과 교육권을 충분히 고려하여 헌법과 국제인권기준 등이 보장하는 학생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조화로운 학교공동체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 4.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형편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면서도 학생인권의 세계적 수준에 걸맞은 조례안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은 미래지향적으로 세계보편적인 학생인권 원칙과 기준을 받아들여, 우리 사회와 특히 경기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당장 변화가 필요한 과제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소수학생들까지 배려하는 내용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 5.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과정을 충분히 거쳐 조례안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학생·선생님·보호자 등 교육공동체의 모든 주체들이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의사소통과정을 충분히 거쳐 내용적 설득력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냄으로써 다양한 주체들이 기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의 운영원칙

#### 1.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에 기초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이 학생인권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미래지향적이고 선진화된 비전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국제사회, 인권시민사회,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경청하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소수자 학생집단도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 2. 글로벌 수준에 걸맞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학습을 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경기지역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헌법과 법률,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내용 등 학생인권에 관한 국내외 원칙과 기준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책연구팀의 심층적인 연구 및 각계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조례안 성안을 위한 학습·조사·분석·연구 등 작업을 심도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 3. 자문위원회의 운영상황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과 논의자료를 홈페이지 또는 가능한 범위의 각종 매체를 통해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경기도학생인권조례로 여는  
새로운 학교의 전망**

.....





## 경기도학생인권조례로 여는 새로운 학교의 전망

# 경기도학생인권조례로 여는 새로운 학교의 전망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

### 차 례

- 학생인권의 현실과 보장의 필요성
- 학생인권에 관한 국제기준과 세계적 흐름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기대 효과
- 경기도학생인권조례로 여는 새로운 학교의 전망  
: 인권이 꽃피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10가지 열쇠말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기본 원칙

## 1. 학생인권의 현실과 조례 제정 필요성



우리 교육은 학생들을 웃게 하나요?



EBS 지식채널e,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 중에서

➤ 늘어나는 청소년 자살



- 2008년 학생 137명 자살
- 2004년~2008년 학생 623명 자살, 5년 새 35.6% 증가
- 성적비관 자살은 4.25배 증가
  - 교육과학기술부(09년)
- 청소년 20명 중에 1명꼴로 자살 시도
  - 질병관리본부 발표(07년)
- 청소년 2명 중 1명꼴 자살 생각, 10명 중 1명꼴 자살 시도
  - 한국청소년상담원(08년9월)
- 청소년 사망원인 2위가 자살
  - 통계청(09년)

➤ 청소년 자살과 교육현실의 상관관계

4.25 등급 자리 '나'



이 모든것이 다 제 잘못이겠죠?  
 명칭한 제겐 한국교육에서의  
 영원한 '자퇴'가 꿈입니다.



- 청소년들이 시사잡지에 보내온 비밀엽서에 담긴 말
- 우리 교육과 사회가 던지는 메시지는? 삶의 기쁨은 어디에?

➤ 학생인권, 이루지 못한 목표



- 경기도의 한 사립 기숙사 고등학교
- 학생들이 학교 현실을 언론과 인터넷에 알려 '리얼 입시 정글고'로 널리 알려짐.
- 기숙사 한 방에서 10~50인이 생활, 체벌, 얼차려, 소지품검사, 편지 검열까지...



2008년 2월, 참다 못한 학생들이 학교옥상에 올라 던진 종이비행기에 쓰여 있던 말

☞ **“사육이 아닌 진정한 교육을 원해요.”**



과연 한 학교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학교는 아니라고요?  
☞ **한 명의 학생이 지르는 비명이라도 귀담아듣는 것이 교육!**

➢ 무책임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



▪ 늘어나는 학생간 폭력

☞ **분출구를 찾지 못한 스트레스와 분노**

▪ 학생회장 선배가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 발생(08년 강릉)

☞ **유일하게 알고 있는 문제해결 방법이 폭력**

➤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



진 없이 떠도는 아이들과  
심보다 더 큰 도시가 필요하다

- 스페인 오렌세에 위치한 벤포스타(Benposta) 어린이공동체
- 어린이는 스스로의 주인, 삶의 기쁨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을 훈련하도록 만든다는 철학에 기초
-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만들어온 시민법

☞ 1조 “시민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다.”

➤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



- 가혹한 경쟁과 우애교육의 실패가 가져올 잔혹한 교육, <배틀로얄>
- 학생인권은 삶의 기쁨과 책임을 일구어내는 교육의 밑거름

☞ 학생인권은 사람과 교육을 동시에 살리는 길



➤ 경기학생인권조례의 선도성



- 학생도 교사도 가고 싶은 학교, 감동이 있는 학교 만들기 서둘러야
- 교육현실을 정확하게 짚어낸 김상곤 경기교육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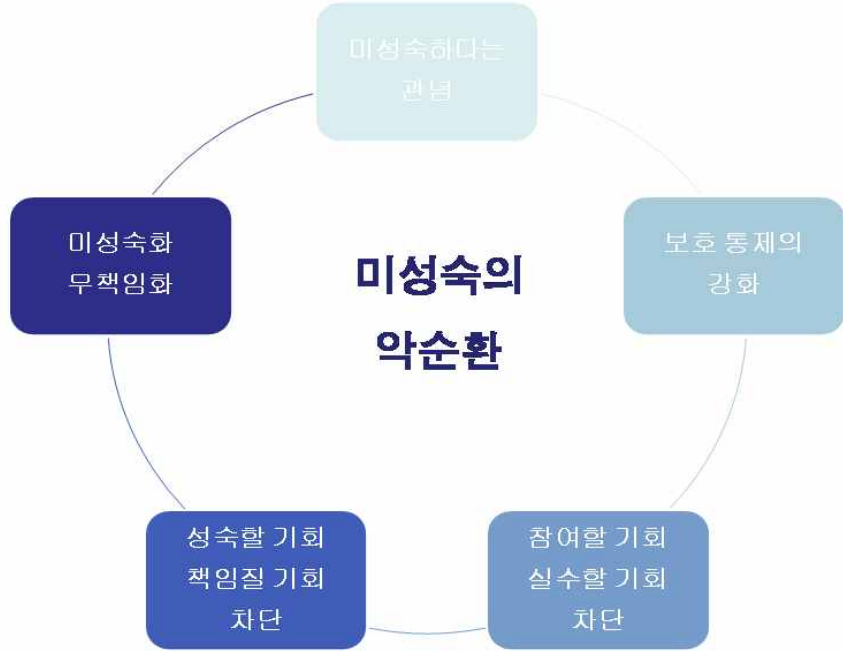
☞ “소통과 나눔 속에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 만들겠다.”

2. 학생인권에 관한 기준과 세계적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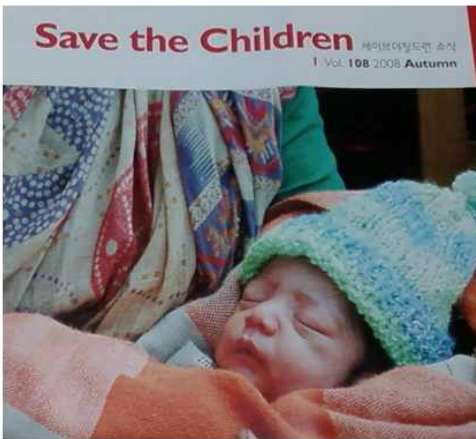


우리 교육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도달하고 있나요?

➤ 어린이, 청소년은 미성숙한가, 미성숙해지는가



➤ 세계가 발견한 첫 번째 해답



✓ 위험에 빠진 어린이, 청소년의 삶에 주목하라

✓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다

- 20세기 전반기의 아동인권관

➢ 세계가 발견한 두 번째 해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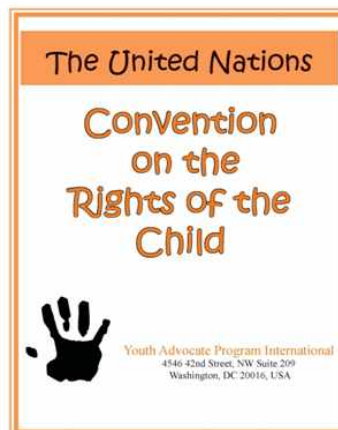
- ✓ 어린이,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 ✓ 돌봄은 참여와 자기결정과 동행해야 한다

- 20세기 후반기의 아동인권관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개 일반원칙(4P)

: 1989년 유엔총회 채택, 1991년 한국정부 가입 비준

- Protection(보호)  
: 18세 미만 아동 누구도 차별 없이
- Prevention(예방)  
: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 Provision(제공)  
: 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 보장
- Participation(참여)  
: 아동 자신에게 영향을 모든 문제에 의견을 표할 권리  
: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



➤ 교육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4대 의무(4A)

: 교육권에 관해 유엔인권기구들이 제시한 기준

▪ Availability(가용성)

: 교육기관의 설립과 이용 보장

▪ Accessibility(접근성)

: 물리적, 경제적 장벽 허물기  
: 차별 없는 학교

▪ Acceptability(수용성) 보장

: 교육의 질과 안전 담보  
: 감당할 만한 규율, 교육과정, 학습부담 보장

▪ Adaptability(적용성)

: 학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융통성 있는 교육의 변화



➤ 학생인권 보장은 교육권 실현의 본질적 요소

▪ 인권으로서의 교육권

(The right to Education)

: 교육권의 주체는 사람(학습자)

: The right to Schooling

- 학교교육에 대한 권리는 교육권 실현의 한 형식
- 교육권 실현의 장소는 학교만이 아니며 교육권은 전 생애의 권리

: The right to Teaching

- 교수권은 교육권 실현을 위해 요청되는 하위의 권리

▪ 유엔아동권리협약 28조(교육권)의 2

: 당사국은 학교규율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지적한 부끄러운 한국교육

: 1996년, 2003년 두 차례 걸쳐 한국정부에 권고한 주요 내용

- 교육의 경쟁적인 풍토가 아동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책임 있는 생활을 영위할 준비를 하는 과정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
- 학교생활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학교에서 차별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 학생회와 교외 정치활동을 통제하는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 교사, 판사, 사회복지사 등 아동 관련 전문가에 대한 인권교육이 부족하다.



☞ 권고 이행을 위한 법적, 정책적 변화 뒤따라야

### 3.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기대 효과



학생 인권의 법적 기반은 충분한가요?

➤ '학생인권 존중'에 관한 국내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 (...)

31조 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기본법 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18조의4(학생의 인권 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필요성



▪ 학생인권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 심각

☞ 구체적 기준 마련으로 갈등 해결

▪ 실효성 부족한 선언적 법률

☞ 구체적 수단으로 실효성 확보

▪ 교사-학생, 교사-교사, 학교-학부모 사이의 불신 증폭

☞ 학생-교사-학부모 권리가 조화를 이룬 교육공동체 회복

▪ 인권과 책임이 무시되는 사회문화

☞ 인권을 존중받고 자발적 책임을 훈련하는 학교

➢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필요성



- 광주, 경남, 부산, 안성, 군포... 지역에서 일고 있는 조례 제정 움직임
-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경기교육청이 최초의 자치 입법 시도
  - ☞ 타 지역의 모델과 선례로 기능

4. 경기도학생인권조례로 여는 새로운 학교의 전망



인권이 꽃피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열쇠말은 무엇일까요?



➢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드는 10가지 열쇠

-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 유엔 조약기구들의 일반논평
-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유엔 인권위원회 등의 결의안과 선언
- 유엔 ‘교육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 유니세프, ‘아동 친화적 학교’ 지침 등 국제인권기준들을 통해 뽑아낸 열쇠

\* 성공회대인권평화센터 외,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2007) 참조



1.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

: 모욕과 폭력이 없는 학교 - 학창시절은 인생의 대기실이 아니다.

: 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증진하고 지원하며 보호하는 데 있다.



“협약은 아동의 지위를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단언한다. 아동은 부모나 국가의 소유가 아니며 단순히 관심의 대상이지도 않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 47항



## 2.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

: 배제와 강요가 없는 학교 - 학생의 참여는 권리이다.

: 형식적 참여, 명목적 참여, 장식적 참여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가 아니다.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비교적 큰 도전이 아니며, 그들의 견해에 적절한 비중을 두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 12항

## 3.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 차별과 획일이 없는 학교 - 학교는 학생의 다양성을 사랑해야 한다.

: 모든 학생은 차이를 존중받는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다.



“다양성은 교육의 초석이다. (...) 성장이란 민주화와 반차별이 존엄한 삶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경험해야 하는 집단적 학습 과정이다.”

-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5/50, 70-71항

#### 4. 감당할 만한 교육

: 배움이 즐거운 학교 - 학생은 학습할 능력을 타고났지만 잘못된 교육에 의해 학습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교육은 '교육'의 궤도를 이탈한 것이다.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모든 아동은 비폭력의 상황에서 학습해야 하고, 학교는 안전하고 아동 친화적이어야 하며, 교과과정은 권리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연구>  
A/61/299, 111항

#### 5.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의 영위

: 자유를 통해 책임을 배우는 학교 - 학생은 인격과 자유를 존중 받을 때 타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교실과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것을 격려하고 허용해야 하며, 스스로 생각할 자유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할 자유를 이해하는 장이다. 교육에 대한 권리는 이러한 자유의 행사를 포함한다.”

-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5/50, 115-7항

## 6. 학생의 삶에 대한 총체적 돌봄이 있는 학교

: 학습뿐 아니라 삶을 돌보는 학교 - 학교는 학생의 삶에서 중요한 인격적, 사회적 환경이다.

: 학생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 들어오기 이전 상황과 학교를 떠난 이후 '가정, 지역사회, 일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유념하는 것이다.



**“학교는 의료서비스, 상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제공하기 위한 자원이자 위탁센터로서 복무해야 한다. 특히 학대, 방임, 피해 및 착취로 고통받고 특별한 필요를 가진 청소년에게 그렇다.”**

- 청소년 비행 방지를 위한  
유엔가이드라인 26항

## 7.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대한 존중

: 자유와 보살핌이 함께 보장되는 학교 - 학생의 모든 권리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 물질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자유의 행사도 가능해진다. 또한, 보살핌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의 의견과 자유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 건강권의 실현은 비밀유지와 사생활을 존중하고 적절한 성 및 생식 관련 건강서비스를 포함하는, 청소년 친화적인 보건의료의 발전에 달려있다.”**

-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4, 23항

### 8.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 학생 권리의 이행에는 학생 자신을 포함한 사회의 전 부분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학교는 폐쇄공간이 아니라, '마을'에 열려 있어야 한다.



**“아동의 인권 보장, 보호 및 감독을 위한 비정부기구와의 제휴와 연대의 발전을 환영하며 정부가 그들에게 비지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비정부기구와의 긍정적인 공식적·비공식적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촉구한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 59항

### 9. 교사의 권한과 역량 강화

: 학생인권 문제를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학생인권 보장은 시스템을 갖춘 학교를 요구한다.

: 교사는 능동적 참여를 보장받고 학생인권을 지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교사는 인권에 기반한 학교 시스템을 갖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자이다. (...)어떤 교육 개혁도 교사의 능동적인 참여와 주인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모든 단계의 교육 체계에서 교사는 존중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 채택,  
다카르(Dakar) 행동계획 69-70항

## 10. 권리 구제에 대한 보장

: 학생 인권이 의미 있으려면 권리 침해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할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권리 회복이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접근 가능한 그리고 친아동적인 신고 체계와 서비스의 수립 : (아동 폭력 신고와 관련) 각 국가는 안전하고 널리 홍보되어 있고 비밀이 보장되고 아동 및 아동의 대리인이 접근하기 쉬운 절차를 세워야 한다. 모든 아동은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연구  
A/61/299, 101-104항

## ➢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상생 관계

### 교권이란?

- 교사의 인권
- 교사의 교육권한(직권)
- 교사의 권위

### 1. 교사의 인권

: 교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가질 권리

: 핵심은 격무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 비차별, 자유권, 인간다운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등 교사도 인권의 주체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



**학생인권이 바로 서야 교사 인권도 바로 선다**



고등학생들에게 최후당하는 여교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캡처사건



- 여교사 성희롱 사건은 교권 문제이기  
에 앞서 젠더 문제
  - 여성인권으로 접근할 때 효과적
  - 그렇지 않으면 여교사는 피해자이자  
무능교사로 전락
- 교사에 대한 도전이 학생들에게 재밌  
거리가 되는 이유 : 교사를 넘어서는 것  
은 학생 사이에서 강자가 되기 위한 관  
문이기 때문. 학교 안 인권문화가 정착  
되지 못한 결과
- 0교시, 강제보충 등 감동하기 힘든  
교육은 교사의 근로시간 연장 없이는  
실현되기 힘들. : 학생인권 수준을 높이  
면 교사인권 수준도 높아질 수 있음.

**2. 교사의 교육권한(직무상의 권리)**

: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 수업의 자유 등 포함

: "교사의 수업권은 교사의 지위에서 생겨나는 직권" (헌법  
재판소 결정례). 교사의 직권은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에 기초하여 규정되고 행사되어야 함

**학생인권은 교사 직권 보장에도 기여한다**



- 학생 강제동원 문제는 학생의 자유권뿐  
아니라 교사의 수업권까지 침해하는 문제
- 학생의 교육권은 헌법상의 권리; 외부 압  
력에 맞서 교사의 수업의 자유가 옹호될 수  
있는 근거이기도 됨.
-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명확한 법 기준이  
정립돼 있을 때 교사는 학생을 지지하는 교  
육을 소신있게 펼 수 있다.

### 3. 교사의 권위

- : 교사의 권위는 전문성과 진실한 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
- : 권리는 주장되고 보장받아야 하는 것인 반면, 권위는 사랑과 존경처럼 주장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

👉 학생인권이 존중될 때 교사의 권위도 살아난다



- 인권을 존중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교사는 인간적, 도덕적 신뢰를 얻게 됨
- 교사의 전문성의 핵심은 지적 자극과 격려를 통해 학생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가에 달려 있음; 자발적 성취의 기쁨은 교사에 대한 교육적 신뢰로 연결

교사가 모든 일을 끝마쳤을 때 아이들은 말한다.

“대단하다. 우리가 해냈어.”

- 노자 도덕경 중 <배움의 도>

## 5.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원칙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가 드리는 약속

**1. 학생은 인권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출발**

: 학생은 일방적 훈육과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의 주체인 사람

**2.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기준의 구현**

: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기준 등 상위법에 부합하는 조례안 성안

**3. 학생-교사-보호자가 함께 가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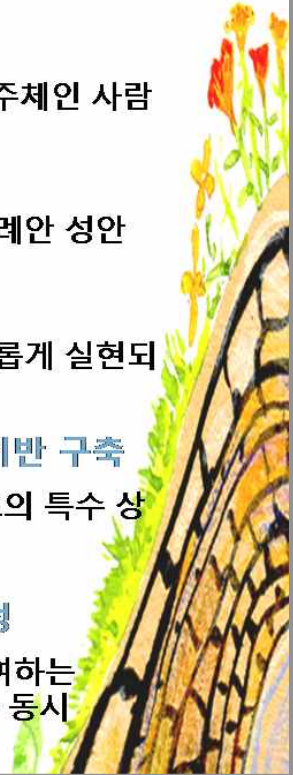
: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보호자의 교육권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교육공동체 건설 지향

**4. 학생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조화를 이루는 기반 구축**

: 미래지향적으로 보편적 인권과제를 지향하되, 경기도의 특수 상황과 소수 학생들의 상황을 반영하여 중점과제를 개발

**5.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거친 조례 제정**

: 교육공동체의 모든 주체들이 공개적,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의사소통과정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설득력을 동시에 확보







# 부 록

---

<부록 1 : 광주학생인권조례안,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일본 가와사끼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부록 2 : 추진대회 즉석설문지>

<부록 3 : 학생인권조례 홈페이지>





# 부 록

## <부록 1 : 광주학생인권조례안,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일본 가와사끼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국내의 경우 광주 지역에서는 2003.경부터 진행된 학생인권 실태조사·연구 및 2005. 8.경 구성된 학생권리조례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의, 공청회 등을 진행하며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경남교육연대의 제안에 따라 2008. 7.경부터 실태조사, 설문조사, 간담회, 협의회 등을 진행하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일본 가와사끼시에서 학생을 포함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를 2000. 12.경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들 사례를 포함한 국내 및 해외 사례들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마련에 선례로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지역과 경남지역의 조례안, 일본 가와사끼의 조례를 부록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학생 권리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권리에 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이하 교육청) 및 학교 등(이하 학교)과 교직원 등(이하 교사)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인권 보장과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된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 ① 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제 2조 2,3,4,5,6항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 ② 학생은 1호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 ③ 교사는 초·중등 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에 규정된 모든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청은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시책을 통하여 학생 권리의 보장과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와 교사는 1항의 교육청 시책에 협력하고 당해 시설 내에서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교육청과 교육감은 학생의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도록 광주광역시 및 구·군 행정기관, 유관기관, 공공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하고 공동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들이 성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학교와 교사를 지원·지도한다.

### 제2장 교육받을 권리

**제4조(주체로서의 권리)** 학생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에 의거 교수·학습 과정에서 인격적 주체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수업받을 권리)** ① 학생은 법률과 학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업 참여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는 교육과정의 변칙적 운영이나 임의적 교내외 행사 등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 ③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학생권리에 관한 조례 제정’ 공청회 자료집』, 2005.12.23. <[http://grassroot.or.kr/home/bbs/board.php?bo\\_table=pds&wr\\_id=181&page=5](http://grassroot.or.kr/home/bbs/board.php?bo_table=pds&wr_id=181&page=5)>, 검색일: 2009.9.20, 133- 146면.

**제6조(선택의 권리)** ① 학생은 보충 학습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가지며, 자기 판단에 따라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재량활동이나 선택과목 등에서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도움을 받을 권리)** 학생은 학습 과정이나 학교 생활에서 학교나 교사에게 도움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학교나 교사는 학생의 요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3장 자치에 관한 권리

**제8조(자치활동)** 학생은 자치활동을 위한 조직·기구를 자유롭게 구성하고 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9조(학생회 구성 및 운영)** ① 학생은 자율적으로 학생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징계나 성적으로 인한 자격제한 등 자치활동에의 자유로운 참여를 침해하는 학생회 제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③ 학교는 자치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율적인 운영과 집행을 보장한다.

④ 학교는 학생회의 자문이나 지도의 요청시 도와주어야 하며, 학생회 결정이나 자치활동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⑤ 학교에서는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집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동아리 조직 및 계발활동)** ① 학생은 희망하는 동아리 조직이나 계발활동을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동아리 및 계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 편성, 유휴 시설 우선 배정, 강사지원 등에 관한 학생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운영에 관한 권리)** ①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 참관이 보장되며, 필요시 정해진 절차에 의거 발언할 수 있다.

② 학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에 대해서 학생의 의견수렴과정을 제도화 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대표의 발언권을 보장해야 한다.

㉠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의 교외활동

㉡ 교복, 앨범, 체육복 등의 학생용품 선정

- ㉔ 보충 자율학습의 실시 등 학생의 수업 선택권과 관련한 안건
- ㉕ 학생생활규정 등 학생 관련 교칙의 제·개정에 관한 안건
- ③ 학교는 다양한 건의통로를 마련하고, 학생의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나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며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제4장 문화 및 복지에 관한 권리

- 제12조(학생문화활동)** ① 학생은 자유로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학생들 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문화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율적 운영과 집행을 보장한다.

**제13조(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양교육, 초청강연,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제14조(학교 축제)** 학교 축제는 학생회 주도로 매년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제15조(학생 복지)** ① 학생은 학교에서 성별, 성적,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등과 관계없이 최선의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청은 학교에 학생복지를 담당할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③ 학교는 소외 계층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교육청은 이를 지원한다.
- ④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의 교직원 화장실 청소 등 불필요한 노동을 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16조(편의시설)**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학생용 시설·설비 및 편의를 위한 물품을 확보해야 한다.

- ㉑ 실내 휴게시설
  - ㉒ 정수기
  - ㉓ 개인 사물함
  - ㉔ 휴지 및 편의물품
- ② 교육청은 학교 신설시 1항에 규정된 시설·설비를 해야 한다.
- ③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건강권)** ① 학교는 학생이 정기적인 건강 검진 및 건강 교육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② 학교는 여학생의 월경으로 인한 공결을 인정하고, 생리대 판매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8조(학생의 날)** 학교는 11월 3일 학생의 날을 기념하여 학생회 자율로 다양한 행사나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5장 적법한 절차를 누릴 권리

**제19조(적법절차)** 학생은 헌법 제12조 1항에 의거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20조(학칙 및 제 규정)**
- ① 학교의 제 규정은 학생의 사생활 및 인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학생은 학생관련 제 규정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제 규정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서술되어야 하고, 또한 학생을 잠재적 징계대상자(비행행위자)로 간주하는 표현을 쓰지 아니한다.
  - ③ 학교의 제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 폭력 및 인격모독 등의 심리적 폭력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④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수렴절차를 제도화하고 학생자치기구의 개정발의권을 보장해야 한다.

- 제21조(절차적 적법절차)**
- ① 학교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할 수 없으며, 이 권리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학생에게 전달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의 징계는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을 통한 심의,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청문(학생, 학부모)의 기회보장, 불복에 따른 재심 요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실체적 적법절차)** 징계의 기준과 사유는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학생을 징계에 회부할 때는 그 사유가 징계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제6장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제23조(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학생은 가족, 가정, 교우관계, 성적 등의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그 비밀은 보호받아야 한다.

**제24조(개인 물품에 관한 권리)** 학교와 교사는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 소지품 검사 및 몰수를 할 수 없으며,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의 사적 기록물을 열람하지 아니한다.

**제25조(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교와 교사는 학생 개인의 정보 수집·처리·보관에 있어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야 하며, 본인 혹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 ② 학생 개인의 정보는 수집 당시에 공지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③ 학생의 부모 혹은 보호자는 자녀의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부정확한 내용이나 잘못 기입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내용, 학생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민·형사상의 법적 진술이 강제되는 경우 이외의 사적인 일에 대한 진술 및 기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26조(정보·통신의 권리)** 학생의 정보·통신에 관한 권리는 수업이나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제27조(모욕당하지 않을 권리)** ① 교사는 순화된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언사를 하지 아니한다.

- ② 학교와 교사는 학생에게 타인의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진술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28조(교제와 종교선택의 자유)** 학교는 학생 간의 교제나 종교의 선택에 있어서 학생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7장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제29조(의사 표현의 자유)** 학생은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부당하고 임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30조(집회·결사의 권리)** 학생의 집회 및 결사는 학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제31조(언론·출판의 권리)** 학교는 학생신문이나 방송, 교지 등 학생 언론이나 출판 등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2조(교외활동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교외 문화행사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33조(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 학교와 교육청은 적법한 절차없이 학생의 게시글을 삭제하지 아니한다.

### 제8장 학생인권보호기구 설치 및 인권교육·연수

**제34조(학교의 인권보호기구 설치)**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 보호와 그 침해의 예방, 치유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로 구성되는 교내 학생인권보호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①항의 기구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교육청의 인권보호기구 설치)** 교육청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그 침해를 예방·치유하기 위해 교육주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생인권보호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그 역할과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성 : 교육청 교육국장, 중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교육위원회 1~2인, 교사 2~3인, 학부모 2~3인, 법률전문가 2인, 인권전문가 2인 기타 시민단체 대표 등 15인 내외로 한다.
2. 역할 : 1) 각종 정책이나 시책, 교육 과정상의 인권보호 및 침해 예방 활동  
2) 학생 인권을 보호·신장하는 정책 연구·개발 및 건의  
3) 학생 인권 침해 사례나 분쟁에 관한 조정  
4) 본 조례안 및 각종 학생인권관련 규정의 해석  
5) 기타 학생 인권 보호 및 신장과 관련한 활동
3. 기타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학교는 학기당 1시간 이상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학생교육과 교사 연수를 연간 계획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학생교육의 내용은 학생회와 사전 협의한다.

**제37조(교육청 인권 연수 및 지원)** 교육청은 모든 직무 연수 시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연수를 1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학교의 학생교육과 교사 연수를 위한 개발 및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의 장은 사설교육기관이나 수련원 등에 학생을 위탁하여 교육할 시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학교는 이 조례안에 맞추어 제 규정을 2006년 8월말까지 제 · 개정하여야 한다.

<T/F팀 A안> 2009.5.11.

##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제정안)

제정 2009. 12.1. 경상남도조례 제000호

### 전 문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비롯하여 자유와 평등에 관한 천부적 인권과 다양한 권리를 가지며,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침해받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학생은 학교 안과 밖에서 자신의 사상이나 양심에 기초하여 행동하며 어느 누구로부터도 신체와 행동의 자유를 억압당하지 않는다. 또한 학생은 학업성적, 주거지역이나 형태, 가족형태, 경제력, 출신지역이나 학교의 종류, 학년, 성별, 장애, 종교, 인종, 피부색, 용모,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 학습과 자아실현에 필요한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아울러 학생은 자신의 인권과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학교와 사회로부터 적절하고 신속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 특히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 그리고 주민들은 신나는 공교육과 자주적인 학생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인정하며, 학생들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 관용, 박애, 헌신, 협력과 배려의 가치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한다. 무엇보다도 학생은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 자아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다.

### 제1장 총칙

제10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제31조, 유엔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내지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의 인권과 권리에 관한 경상남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등(이하 교육청), 학교 등(이하 학교), 교직원 등(이하 교직원), 그리고 주민의 역할, 의무, 그리고 책임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고 이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10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종류의 것으로서 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은 제1호가 규정하는 학교에 재학하거나 퇴학처분을 다투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그리고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주민은 「지방자치법」 제1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인권이라 함은 「헌법」, 여러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협약), 그리고 국제관습법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 평등,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말한다.

제103조(적용) ①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 그 교직원과 학생에게 적용한다.

- ②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의 규범목적은 존중한다.

제104조(원칙) ① 교육청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에 의거하여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상남도와 유관기관 등 공공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직원은 교육과 학교업무를 수행하는 데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가장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주민은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위하여 교육청, 학교, 그리고 교직원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회, 동아리 등 자치활동에 관한 학생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 ⑤ 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다른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2장 자유권

제201조(인간으로서의 존엄성)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학교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부당한 학습을 강요할 수 없다.

제202조(학생의 의사결정권) ① 학생의 의견은 학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 ② 재량활동, 선택과목, 보충학습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기타평가(사설모의고사)는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칙이나 학교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한 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④ 학교가 교복, 앨범, 체육복 등 선정할 경우 반드시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3조(학생자치와 참여의 보장) ① 학생은 학생회 등 자치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동아리를 자유롭게 설립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유휴 시설 우선 배정, 강사지원 등에 관한 학생의 요구를 존중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04조(신체의 자유) ① 학생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어떠한 체벌도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교직원과 학생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폭언을 사용할 수 없다.
- ③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에게 어떠한 노동도 강요할 수 없다.
- ④ 학생은 두발의 자유를 갖는다.

제205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학교와 교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② 학생에게 반성문이나 서약서, 지문날인, 서명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③ 교직원은 학생의 인격에 반하는 대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206조(표현, 집회, 시위의 자유) ① 학생은 표현,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가지며, 학교와 교직원은 이를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 ② 교복, 양말, 머리핀, 반지 등 복장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 ③ 이름표착용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 ④ 학교축제의 내용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 ⑤ 학생들의 주장을 담은 홍보물은 학내에 자유롭게 붙일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 ⑥ 학생은 교외 문화행사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207조(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①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교직원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되며, 일기장 또는 개인수첩 등의 사적 기록물을 강요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
- ③ 교직원은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 ④ 학교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208조(정보접근권) ① 학생은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와 교직원은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얻기 위하여 교내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휴대폰 사용과 그 범위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 제3장 평등권

제301조(평등권) ① 모든 학생은 평등하다.

- ② 학교의 교육재정(예산)이 모든 학급이나 동아리에 균등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을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302조(차별의 금지) ① 학생은 학년이나 나이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다.

- ②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학업성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
- ④ 학생이 그 법정대리인(부모, 친권자 등)의 직업이나 소득수준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다.
- ⑤ 학생의 용모, 출신지역이나 출신학교,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303조(성차에 의한 차별의 금지) ① 학생은 성차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다.

- ② 교직원은 성폭력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 ③ 학교는 학생들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여학생용 화장실과 휴게시설 등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제304조(차별에 대한 이의제기) 차별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제기는 적절하게 반영되어 기록되어야 하며, 학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장 교육복지권

제401조(교육권) ① 학교와 교직원은 모든 학생이 교육을 받고 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에게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권장하여서는 안 된다.
- ③ 학교는 수업에 필요한 학습지원물품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학생들이 학습자료 등을 준비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 ④ 수업할 때 학생들의 질문기회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⑤ 학교는 교내외 행사를 위하여 학생들의 수업참여권과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⑥ 성적이 하위권 학생에게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이유로써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제402조(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 ① 학생은 쾌적한 교실환경 아래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숲을 잘 조성하여야 한다.
- ④ 질 높은 수업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가 OECD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⑤ 학교생활을 하는 데 방해되는 소음을 예방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 ⑥ 수도, 화장실 등 학교의 각종 시설들은 청결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 ⑦ 체육활동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 ⑧ 학생들의 고민에 대한 상담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제403조(급식에 관한 권리) ① 급식과 그 식자재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 ② 급식은 학생의 선호도 등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식자재의 안전도에 대한 검수권을 가지며, 학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04조(안전권) ① 학생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대한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 ② 학생안전을 이유로 학생활동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에 출입하는 차량 때문에 학생들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
- ④ 학교는 등하굣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과 함께 협조해야 한다.
- ⑤ 학교의 시설물은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 ⑥ 자살을 예방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상담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405조(휴식과 문화의 권리) ① 학생은 자유로운 휴식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문화공간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학교는 학생휴게실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양교육, 초청강연,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 ④ 학교는 생리로 인한 공결제도를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며 널리 교육하여야 한다.
- ⑤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 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06조(적법절차와 권리실현절차의 권리) ① 학교규정은 학생징계절차를 학생인권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 ② 징계 받는 학생의 변론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 ③ 학교규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인권은 보장되며, 학생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2. 학생은 학생관련 제 규정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3. 학교규정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야 하고, 학생을 잠재적 징계대상자(비행행위자)로 간주하는 표현을 쓰지 아니한다.
  4. 체벌을 포함한 신체적 폭력, 인격모독 등의 심리적 폭력, 언어폭력을 금지한다.
  5.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수렴절차를 제도화하고 학생자치기구의 개정발의권을 보장해야 한다.

- 제407조(보호를 받을 권리) ① 학생은 학교에서 성차별, 성희롱 등 제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와 교직원은 학교폭력, 성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이 발생할 때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 ③ 학교와 교직원은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을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서 등 외부기관과 신속하고 적절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장 학생인권보장위원회 등

- 제501조(학교의 학생인권보장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서 「학생인권보장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학교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 등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의 장과 교감은 제외된다.
- ③ 교직원위원, 학생위원, 학부모위원, 시민단체위원은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④ 시민단체위원이 위원장이 되며 관련 업무 교직원이 간사가 된다.
- ⑤ 학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학생인권과 권리를 위한 정책연구와 중장기 학교정책 수립
  2. 학생인권과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
  3. 학생인권과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는 활동
  4. 학생인권과 권리에 대한 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활동
  5. 학생인권과 권리의 상황에 대한 조사활동과 분쟁조정
  6. 학생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다른 기관과의 협력
  7. 기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
- ⑥ 학교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이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⑦ 학교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제502조(교육청의 학생인권보장위원회) ①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독립기구로서 「학생인권보장위원회」(이하 교육청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교육청위원회는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선출직 교육위원회 추천 교육의원 2인, 교원단체 추천 1인 이상 2인 이내, 학부모단체 추천 1인 이상 2인 이내, 창원지방변호사회 추천 1인, 국가인권위원회 추천 1인을 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가운데 호선하며, 관련 업무 장학사를 간사로 한다.
- ④ 교육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1. 학생인권과 권리를 위한 정책연구와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 2. 학생인권과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
  - 3. 학생인권과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는 활동
  - 4. 학생인권과 권리에 대한 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활동
  - 5. 학생인권과 권리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그리고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 6. 학생인권과 권리의 상황에 대한 조사활동과 분쟁조정
  - 7. 학생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다른 기관과의 협력
  - 8. 기타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
-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육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교육청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이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⑦ 교육청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503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 학교위원회와 교육청위원회는 학생인권의 보호와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는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학교위원회나 교육청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 ④ 학교위원회나 교육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그리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가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504조(진정과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① 학생의 인권과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된 경우 교육청위원회에 이를 진정하거나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교육청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 등의 침해우려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최종적인 구제결정 이전에 피해 학생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련 당사자들에게 다음 각 호를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1. 인권과 권리의 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중지
2. 인권과 권리의 침해나 차별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3. 그 밖에 피해 학생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05조(인권자료실) ① 교육청위원회는 도교육청 안에 인권자료실을 둔다.

- ② 인권자료실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립·정리·보존하여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제506조(교직원인권연수 등) ① 학교는 학기당 2시간 이상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교직원인권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청은 모든 직무연수에서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연수를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연구와 교재개발 등에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07조(학생인권교육) ① 학교는 학기당 2시간 이상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청은 학교의 학생인권교육에 필요한 연구와 교재개발 등에 재정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이나 대학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08조(인권영향평가) 교직원은 학생인권과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책이나 행위를 할 경우 미리 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정책 등의 집행 후에는 인권영향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부칙(2009. .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칙 등의 제정 내지 개정시한) 학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규칙과 여러 규정을 2010년 2월 말일까지 제정 내지 개정하여야 한다.

## 가와사끼시(市)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2000년12월21일·가와사끼시(市) 조례 제72호

### 전 문

아동은 각자 각자가 하나의 인간이다. 아동은 매우 소중한 가치와 존엄을 지니고 있으며, 개성이나 타인과의 차이를 인정받고, 자신이 그 자체로서 소중히 여겨지기를 원한다. 아동은 권리의 전면적인 주체이다. 아동은 아동 최선의 이익 확보, 차별금지, 의견존중 등 국제적인 원칙 하에 권리를 종합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받는다. 아동에게 있어서 권리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자아실현하며,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아동은 권리가 보장됨으로써 풍요로운 아동기를 보낼 수 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해 학습하고, 실제로 행사하는 과정에서 아동은 권리인식을 깊게 하고, 권리를 실현할 능력,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능력, 책임아동의 익힐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받기 위해서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도 존중되고 보장하여야 하며, 각각의 권리를 상호 존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은 어른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동반자이다. 아동은 현재 사회의 일원으로서,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사회의 나아가야 할 길과 형성에 관하여 고유한 역할이 있음과 동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는 아동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아동은 동시대를 사는 지구시민으로서, 를 ·보낼 아동과 상호이해 ·교류를 확대하고, 공생과 평화를 염원하며, 자연을 지키고, 도시넬 보다 나은 환경을 창조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市)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력은, 시(市)넬 아동에서사람들의 공동체 삶을 영위케 하는 권리의 보장과 직결된다. 우리들은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등의 국제적인 원칙에 따르고, 아동 스스로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이에 우리들은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에 근거하여,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하고,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와 관련 시(市) 등의 책무, 인간으로서 가지는 아동의 귀중한 권리, 가정, 양육, 학교시설 및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보장 등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용어들의 정의는 당해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에 따른다.

- (1) 아동: 시민을 비롯하여 시와 관계가 있는 18세 미만의 자, 기타 그들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2) 양육, 교육시설: 아동복지법(1947년 법률 제164호)에 규정한 아동복지시설,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에 규정한 학교, 專修학교, 각종학교 기타의 시설 중, 아동이 양육되고, 배우기 위하여 마련된 모든 시설.
- (3) 부모에 대신하는 보호자: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수양부모(里親) 또는 보호수탁자 기타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자.

### 제3조(책임)

1. 시(市)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시책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시민은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장(場)에 있어서, 그 권리가 보장되도록 시와 협동하여 노력해야 한다.
3. 양육, 교육시설의 설치자, 관리자 및 직원(이하 ‘시설관계자’ 라고 한다.) 가운데, 시(市) 이외의 시설관계자는 시(市)의 시책에 협력하고 노력해야 함과 동시에 그 시설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사업자는 고용된 시민이 양육하는 아동 및 고용된 아동의 권리의 보장에 관하여 시(市)의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국가 등への 요청) 시(市)는 아동의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도록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 등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시(市) 외에 있어서도 그 권리가 보장되도록 활동해야 한다.

### 제5조(가와사키 아동권리의 날)

1. 시민들 사이에 폭넓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위하여, ‘가와사키 아동권리의 날’을 둔다.
2. 가와사키 아동권리의 날은 11월20일로 한다.
3. 시(市)는 가와사키 아동권리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제6조(홍보) 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하여 그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 제7조(학습 등への 지원 등)

1. 시(市)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학습 등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건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시(市)는 시설관계자 및 의사, 보건의 등 아동의 권리의 보장과 직무상 관계된 자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보다 깊이 있게 이루어지도록 연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 시(市)는 아동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자주적인 학습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8조(시민활동에의 지원) 시(市)는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활동에 대하여 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함과 함께,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과의 연계를 도모해야 한다.

## 제2장 인간으로서 가지는 아동의 귀중한 권리

제9조(인간으로서 가지는 아동의 귀중한 권리) 이 장에서 규정하는 권리는, 아동이 인간으로서 자라고 배우고 생활하는 데에 특히 중요한 것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제10조(안심하고 생활할 권리) 아동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생명이 지켜지고 존중되는 것.
- (2) 애정과 이해를 가지고 양육되는 것.
- (3)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받지 않는 것.
- (4)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받지 않으며, 방치되지 않는 것.
- (5) 건강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며, 성장에 어울리는 생활이 가능한 것.
- (6)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

제11조(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권리) 아동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개성이나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인정되고, 인격이 존중되는 것.
- (2) 자신의 생각이나 신앙을 유지하는 것.
- (3) 비밀을 침해당하지 않는 것.
- (4) 자신에 관한 정보가 부당하게 수집되거나 이용되지 않는 것.
- (5) 아동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취급을 받지 않는 것.
- (6) 안심할 수 있는 장소에서 휴식하는 것, 여가를 가지는 것.

제12조(자신을 지키고, 또한 지켜질 권리) 아동은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모든 권리의 침해로부터 벗어나는 것.
- (2)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상황으로부터 보호되는 것.
- (3) 상황에 따른 적절한 상담의 기회, 상담에 어울리는 분위기가 확보되는 것.
- (4) 자신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결정할 때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가능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그 의견이 존중되는 것.
- (5) 자신을 회복함에 있어서, 그 회복에 적절하고 어울리는 분위기가 주어지는 것.

제13조(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힘을 북돋을 수 있는 권리) 아동은 그 성장에 따라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힘을 북돋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노는 것.
- (2) 배우는 것.
- (3)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
- (4) 정보를 얻는 것.
- (5) 행복을 추구하는 것.

제14조(스스로 결정할 권리) 아동은 자신에 관한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자신에 관한 것을 연령과 성숙도에 맞게 결정하는 것.
- (2) 자신에 관한 것을 결정할 때에, 적절한 지원 및 조언을 받는 것.
- (3) 자신에 관한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

제15조(참여할 권리) 아동은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자신을 표현하는 것.
- (2)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그 의견이 존중되는 것.
- (3) 동료들 만들고, 동료와 모이는 것.
- (4) 참여를 할 때에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

제16조(개별적인 필요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 아동은 그 처한 상황에 따라 아동에게 있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1) 아동 또는 그 가족의 국적, 민족,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장애 기타의 처한 상황을 원인 또는 이유로 한 차별 및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

- (2) 전항의 처한 상황의 차이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가운데에 공생할 수 있는 것.
- (3) 장애가 있는 아동이 존엄을 가지고, 자립하며, 사회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도모하는 것.
- (4) 국적, 민족, 언어 등에 있어서 소수의 입장에 있는 아동이 자신의 문화 등을 향유하고, 학습하며, 표현하는 것이 존중되는 것.
- (5) 아동이 처한 상황에 따라,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의 입수 방법, 의견표명의 방법, 참여의 방법 등에 대한 연구 및 배려가 주어지는 것.

### 제3장 가정, 양육, 교육시설 및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의 보장

#### 제1절 가정에서의 아동의 권리보장

##### 제17조(부모 등에 의한 아동의 권리보장)

1.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하는 보호자(이하 ‘부모 등’ 이라 한다.)는 그 양육하는 아동의 권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자이다.
2. 부모 등은 그 양육하는 아동이 권리를 행사할 때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부모 등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그 양육하는 아동을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부모 등은 양육, 학교시설 및 보건, 의료, 아동복지 등의 관계기관으로부터 그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아동 본인의 정보를 얻는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8조(양육의 지원)

1. 부모 등은 그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시(市)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시(市)는 부모 등이 그 아동의 양육에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을 특히 배려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사업자는 고용된 시민이 안심하고 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19조(학대 및 체벌의 금지) 부모 등은 그 양육하는 아동에 대하여 학대 및 체벌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 제20조(학대로부터의 구제 및 회복)

1. 시(市)는 학대 받은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절한 구제 및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전항의 구제 및 그 회복에 있어서는,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아동의 심신상황을 특히 배려하여야 한다.
3. 시(市)는 학대의 조기발견 및 학대 받은 아동의 신속하고도 적절한 회복을 위하여 관계단체 등과 연계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절 양육, 교육 시설에서의 아동의 권리보장

### 제21조(양육, 교육환경의 정비 등)

1. 양육, 교육 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설치관리자'라 한다.)는 그 아동의 권리의 보장이 도모되도록, 양육, 교육시설에 있어서 아동이 충분히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2. 전항의 환경정비에 있어서는 그 아동의 부모 등을 비롯한 지역의 주민과 연계를 도모함과 함께, 양육, 교육시설의 직원의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22조(안전관리체제의 정비 등)

1. 시설설치관리자는 양육, 교육시설의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함과 동시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부모 등 지역의 주민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안전관리의 체제 정비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시설설치관리자는 아동의 자주적인 활동이 안전 속에 보장되도록 그 시설 및 설비의 정비 등에 있어서 배려해야 한다.

### 제23조(학대 및 체벌의 금지 등)

1. 시설관계자는 그 아동에 대하여 학대 및 체벌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직원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의 방지를 위한 상담을, 그 아동이 안심하고 행할 수 있도록 양육, 교육시설의 체제 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시설설치관리자는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에 관한 상담을 그 아동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양육, 교육시설에 있어서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4. 시설설치관리자는 학대 및 체벌에 관한 아동의 상담을 받을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그 상담의 해결에 필요한 사람, 관계기관 등과 연계하여, 아동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24조(집단따돌림의 방지 등)

1. 시설관계자는 집단따돌림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시설관계자는 집단따돌림의 방지를 위해, 아동들을 상대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계발에 노력해야 한다.

3.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직원에 대하여, 집단따돌림의 방지에 관한 연수 등의 실시에 노력해야 한다.
4. 시설설치관리자는 집단따돌림에 관한 상담을 그 아동이 안심하고 행할 수 있는 양육, 학교시설에 있어서의 체제 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시설관계자는 집단따돌림에 관한 아동의 상담을 받았을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그 상담의 해결에 필요한 자, 관계기관 등과 연계하여, 아동의 구제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시설관계자는 집단따돌림을 행한 아동에 대하여도 필요한 배려를 하는 바탕 위에서 적절한 대응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25조(아동 본인에 관한 문서 등)

1. 양육, 교육시설에 있어서 아동 본인에 관한 문서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2. 전항의 문서 중 아동의 이해에 영향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그 작성에 있어서 아동 본인 또는 그 부모 등의 의견을 구하는 등 공정한 문서의 작성에 대한 배려가 행해져야 한다.
3. 양육, 교육시설에 있어서는, 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아동 본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4. 전항의 정보는 양육, 학교 시설의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되거나 외부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5. 제1항의 문서 및 제3항의 정보에 관해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손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아동 본인에게 제시되거나 제공되도록 문서 및 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6. 양육, 학교 시설에 있어서 아동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처분 등을 결정하기 전에, 그 아동 본인으로부터 사정, 의견 등을 청취하는 등의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제3절 지역에 있어서의 아동의 권리보장

#### 제26조(아동의 성장의 장 등으로서의 지역)

1. 지역사회는 아동이 성장하는 곳이고, 가정, 양육, 교육시설, 문화, 스포츠 시설 등과 일체가 되어 그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곳임을 고려하여, 시(市)는 지역사회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또한 아동의 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 및 교육환경의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노력해야 한다.
2. 시(市)는 지역의 아동, 그 부모 등 시설관계자, 그 외의 다른 주민 각자 각자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양육, 교육환경에 관한 협의, 그 외의 활동을 하는 조직의 정비 및 활동에 대한 지원에 노력한다.



## 제27조(아동 고유의 공간)

1. 아동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하며, 휴식하면서 자신을 되찾고, 자유롭게 놀고 활동하면서, 안심하고 인간관계 형성이 가능한 장소(이하 ‘아동 고유의 공간’이라 한다.)가 중요함을 고려하여, 시(市)는 아동 고유의 공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아동 고유의 공간 확보 및 그 존속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시(市)는 아동 고유의 공간 제공 등의 자주적인 활동을 행하는 시민 및 관계 단체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그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28조(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아동의 활동) 지역사회에서의 아동의 활동은, 아동이 풍요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성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고려하여, 시(市)는 지역에 있어서 아동의 자치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제4장 아동의 참여

제29조(아동의 참여 촉진) 시(市)는 아동의 시정 등에 대하여 시민으로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 양육·교육 시설 기타 활동의 거점이 되는 공간과, 그 운영 등에 대하여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문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모든 시책에 있어서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고려하여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 방법의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 제30조(아동 회의)

1. 시장은 시정에 대하여, 아동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가와사끼시(市) 아동회의(이하 ‘아동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2. 아동회의는 아동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조직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한다.
3. 아동회의는 그 주체인 아동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아동의 종합 의견 등을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등을 존중해야 한다.
5.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아동회의에 모든 아동의 참여가 촉진되고, 그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행한다.

제31조(참여활동의 거점 만들기) 시(市)는 아동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들만이 자유롭게 안심하며 모일 수 있는 거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2조(자치적 활동의 장려)**

1. 시설설치관리자는 그 구성원으로서의 아동의 자치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자치적인 활동에 의한 아동의 의견 등은 양육, 교육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보다 열린 양육, 학교시설)** 시설설치관리자는 아동, 부모, 기타 지역주민에게 보다 열린 양육, 교육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에게 양육, 학교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을 실시하고, 그들 및 양육, 교육시설의 직원들과 함께 양육, 학교시설을 강화하고 상호 조화가 되기 위하여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4조(시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아동의 의견)** 시(市)는 아동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시(市)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아동의 참여 방법 등에 대하여 배려하고,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상담 및 구제****제35조(상담 및 구제)**

1. 아동은 가와사끼시(市) 인권옴부즈퍼슨에 대하여,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상담하거나 권리의 침해로부터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시(市)는 가와사끼시(市) 인권옴부즈맨에 의한 것 외에도, 아동의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 또는 구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관계단체 등과 연계를 도모하고, 아동 및 그 권리의 침해의 특성을 배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장 아동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제36조(행동계획)**

1. 시(市)는 아동에 관한 시책의 추진을 할 때에 아동의 권리보장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가와사끼시(市) 아동의 권리에 관한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이라 한다.)을 책정한다.
2.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행동계획을 책정함에 있어서, 시민 및 제38조에 규정된 '가와사끼시(市) 아동권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37조(아동에 관한 시책의 추진) 시(市)의 아동에 관한 시책은 아동의 권리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배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 (1)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기초를 둘 것.
- (2) 교육, 복지의료 등과의 연계 및 조정이 도모되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일 것.
- (3) 부모 등, 시설관계자, 기타 시민과의 연계를 통하여 개별아동을 지원하는 것.

## 제7장 아동의 권리보장 상황의 검증

제38조(권리위원회)

1. 아동에 관한 시책의 충실을 도모하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와사끼시(市) 아동권리위원회(이하 ‘권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권리위원회는 제36조 제2항에 정한 것 외에, 시장 기타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아동에 관한 시책에 있어서의 아동권리의 보장상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다.
3. 권리위원회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4. 위원은 인권, 교육, 복지 등 아동의 권리에 관계된 분야에 있어서 학식경험이 있는 자 및 시민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5.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6.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7. 제4항의 위원 외에, 특별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권리위원회에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
8. 위원 및 임시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 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같다.
9. 앞서 각 항에서 정한 것 외에, 권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9조(검증)

1. 권리위원회는 전조 제2항의 자문이 있는 때에는, 시장 기타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자문에 관련된 시책에 대해 평가 등을 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한다.
2.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권리위원회로부터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 등을 행하고, 그 결과를 권리위원회에 보고한다.
3.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4.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구함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등에 있어서 배려해야 한다.

5. 권리위원회는 제2항의 보고 및 제3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아동의 권리보장 상황에 대하여 조사, 심의한다.
6. 권리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심의에 의하여 얻어진 검증결과를 시장 기타 집행기관에게 답신한다.

제40조(답신 등에 대한 조치 등)

- (1) 시장 기타 집행기관은 권리위원회로부터의 답신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2) 시장은 전조규정에 의한 답신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구한 조치에 대하여 공표한다.

## 제8장 잡칙

제41조(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 기타 집행기관이 정한다.

### 부 칙

(시행일)

1. 이 조례는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권리침해로부터의 구제 등을 위한 체제정비)

2. 시(市)는 아동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이 드러나기 어렵고, 인식되기 힘들다는 점을 포함, 아동의 심신이 장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입을 것을 고려하여, 아동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으며, 구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학대 등의 예방, 권리침해로부터의 구제 및 회복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운 체제를 시급히 정비한다.

### 부 칙

이 조례의 시행일은 시장이 정한다.

## <부록 2 : 추진대회 설문지>

###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에 바란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나눔 속에 학생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구성원들이 함께 만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리 작성하지 마시고 2부 순서 중 PPT 자료 발표 후에 작성해 주십시오.

\*○ 또는 √로 표시해 주세요.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관리자, 교육전문직		기타	
----	--	-----	--	----	--	-----------------	--	----	--

\*(1-5) 공감 정도에 따라 ○ 또는 √로 표시해 주세요.

① 매우 공감 ② 약간 공감 ③ 별로 공감하지 않음 ④ 전혀 공감하지 않음

1. 경기도 학생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①		②		③		④	
---	--	---	--	---	--	---	--

2. 교육감님 인사말에 밝힌 학생인권조례제정의 기본원칙에 공감하십니까?

①		②		③		④	
---	--	---	--	---	--	---	--

3. '경기학생인권조례로 여는 새로운 학교의 전망'(PPT자료)에 담긴 조례자문위의 기본정신과 철학에 공감하십니까?

①		②		③		④	
---	--	---	--	---	--	---	--

4. 학생인권 증진이 자유와 책임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새로운 학교질서를 구축할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하십니까?

①		②		③		④	
---	--	---	--	---	--	---	--

5. 학생인권 증진이 교권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하십니까?

①		②		③		④	
---	--	---	--	---	--	---	--

6. 주요 학생인권과제 10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부터 아라비아 숫자 1 부터 5까지로 표시해 주세요.

항목	순위	항목	순위
두발과 복장 규제 완화		체벌 금지	
왕따 등 집단괴롭힘 금지		가정형편/성적/용모차별 금지	
자율적 학생회/학생활동 보장		야간자율학습 등 과잉학습 강제 금지	
무작위 소지품검사 금지 등 사생활 보장		각종 문화활동 접근과 참여 보장	
각종 고민상담, 교육지원 등 학생 복지 강화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소수집단차별 금지	
학생선도(징계)에서 공정성, 변론권 강화		인권교육 강화	
학생인권침해 구제수단 강화		기타 ( )	

7.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아래 여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부록 3: 학생인권조례 홈페이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

<<http://human.kerinet.re.kr/>>

